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31
----------	------

2023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치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임
- 나. 장애인 구강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남권에 추가 개설되는 장애인 치과병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다. 치과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료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장애인 구강진료를 통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접근성 향상
- 전문 치과병원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진료연계와 병원시설 운영관리 및 교육 전반에 대하여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능강화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치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사업
- 장애인 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어울림플라자 내, 신축)
- 규 모 : 1,194㎡(지상 5층, 지하3·4층)
- 위치도 및 조감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25년 초)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3.9.2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나. 향후계획 : 어울림플라자 공정에 맞춰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공의료추진단 시립병원강화팀 김선미 (☎2133-9234)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구강 의료 접근성 향상과 전문성 있는 치과 진료 제공을 위해 '25년 초 서남권에 추가 개설 및 운영 예정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 사무'를 장애인 치과 진료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의료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한 것임.
-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의3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

○ 민간위탁 추진경위

- 서남권역 어울림플라자 내 장애인 치과병병원 신설 「어울림플라자」 기본구상수립('15.6월)
- 국제현상설계 공모(지명공모) 추진('18.9~12월)
- 어울림플라자 건축협의를 완료('21. 4.2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1. 6월)
- 어울림플라자 공사착공('22.8.3.)
- 제2장애인치과병원 명칭공모 ('23.1.~3.):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선정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3.4.~7.):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추가
-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수립('23. 9월)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 위탁유형 : 사무형
- 위탁기간 (예정) : 5년 (2025년 초 예정)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 치과병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어울림플라자 내, 신축)
시설규모	1,194㎡(지상 5층, 지하3·4층)
시설구성	치과용의자, 전신마취실 및 회복실, 페디랩실 등
이용대상	치과 진료 등이 필요한 장애인
민간위탁금	어울림 플라자 공정에 맞춰 예산 편성 (예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운영	사무형	신규	-	5년	적정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 서울특별시장의 민간에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 치과병원 운영”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체적인 위탁사무

- 장애인치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진료사업
- 장애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임상실습 및 의료요원의 훈련
- 장애인 진료와 관련된 국제교류와 협력
- 치의학연구(임상연구 포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사무’는 첫째, 주된 사무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구강질환 진단 및 진료 등의 ‘의료 행위’라는 점에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상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판단됨.
- 특히, 동 사무는 치과진료 등의 의료서비스 대상이 장애인임에 따라, 치과 진료 관련 전문성과 더불어 장애의 종류와 특성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사무라 판단됨.
- 왜냐하면 장애인 치과 진료의 경우 발치, 스케일링 등 비교적 간단한 치료에도 ‘전신 마취’ 등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장애 환자의 돌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페디랩(Pedi-wrap)’실 등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둘째, 동 사무는 ‘치과병원 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도 비장애인 대상 치과병원 대비 더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무라 판단 됨.

왜냐하면 장애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병원 내부 공간 구성과 특수한 의료 장비 배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공간 배치 등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병원 방문 접수부터 검사와 진단, 진료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의 장애 환자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신뢰감 확보(Rapport)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 따라서, 동 사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등을 수반한 치과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사무라는 점과 병원 운영에 있어서 장애환자의 장애 종류와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전문성 있는 민간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 판단됨.
-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 치과병원’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존재함에 따라, 동 사무를 민간 위탁 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 본 동의(안)은 '25년 초 서남권에 추가 개설 및 운영 예정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운영 사무'를 장애인 치과 진료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의료법인 등에 신규위탁 하기 위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동 사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신 마취 등을 수반한 치과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사무라는 점과 병원 운영에 있어서 장애 환자의 장애 종류와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 있는 민간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 판단됨.
-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 치과병원'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존재함에 따라, 동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동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 예산편성'이 동 치과 병원이 실제 설치되어 운영될 건물인 '어울림 플라자'의 공정 진척률('24년 11월 준공 예정 및 '25년 초 개소 예정)과 연동되어 있어 '사무의 민간 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와는 별개로 향후 다소 가변적인 공정 진척률과 연동된 동 사무의 예산 편성 및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향후 동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 치과병원(서남권)'을 운영할 때 기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동북권)'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연계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장애 환자들의 치과 진료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분산하고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이와 더불어 기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동북권)’의 여러 노하우들과 운영상 어려운 점을 조기에 공유하여 동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 치과병원’의 빠른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기존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이 병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신 마취 치과 진료 시설, 장비 및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장기간 환자 대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31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치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임
- 나. 장애인 구강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남권에 추가 개설되는 장애인 치과병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다. 치과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료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장애인 구강진료를 통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접근성 향상

- 전문 치과병원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진료연계와 병원시설 운영관리 및 교육 전반에 대하여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능강화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치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사업
- 장애인 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어울림플라자 내, 신축)
- 규 모 : 1,194m²(지상 5층, 지하3·4층)
- 위치도 및 조감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25년 초)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3.9.2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나. 향후계획 : 어울림플라자 공정에 맞춰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공의료추진단 시립병원강화팀 김선미 (☎2133 - 9234)